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
----------	-----

제출년월일 : 1994. 2.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에 의거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직급명칭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함 (안 제3조 및 별표).

□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 12. 31.)

□ 조 례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과 제4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별표]의 직급별란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